

액화석유가스의

[]공급중지
[]공급제한

명령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공급자	상호
	대표자
	소재지

수요자	상호
	대표자
	소재지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수요자의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므로, 위 공급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[]중지 []제한할 것을 명령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